

**참고 1**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

**참고 2**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(휴업)보상수준 비교 사례

**참고 3**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(유족)보상수준 비교 사례

**참고 1**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

- ❖ 자동차보험은 추가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낮음(재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차이가 큼)
- ❖ 사망·장해의 경우,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있지만,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산재보험이 유리
- ❖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 지원

구분	산재보험	자동차보험
사망	<b>유족급여</b> (일시금) 평균임금×1,300일 (연금) 평균임금×365×(52%~67%) 일시금 상한액 267,391,800원 (최고보상 205,686원×1,300일)	<b>상실수익</b> (월평균현실소득액-생활비) ×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
	<b>장의비(평균임금 ×120일분)</b> 상한액 15,069,990원 하한액 10,763,580원	<b>장례비</b> 500만원
	<b>요양급여 (실비)</b>	<b>치료관계비 (실비)</b>
	<b>휴업급여</b> 평균임금×70%	<b>상실수익</b> 수입감소액의 85% (과실정도에 따라 차이)
	<b>재요양, 합병증 예방관리</b>	<b>없음</b>
장해	<b>장해급여</b> 평균임금×장해일수(1~14급) (일시금) 55일~1,474일 (연금) 138일~329일/연	<b>상실수익</b> 월평균소득액×노동능력상실률 ×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
재활	<b>심리상담, 재활스포츠, 직업훈련지원 등</b>	<b>없음</b>

**참고 2****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(휴업)보상수준 비교 사례****□ 사고 상황**

- 노동자 A씨(평균임금:10만원)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요양(진료비 75만원)

\* 수입감소액(공제 후 금액 기준) : 89,000원(세후 월 267만원÷30)

**□ 산재보험으로 청구 : 7,050,000원**

- 산재보험급여: 휴업급여\*(630만원)+요양급여(75만원)

\* 휴업급여: 70,000원(평균임금의 70%)× 90일(요양기간) = 630만원

**□ 자동차보험으로 청구**

- 단독사고 또는 과실율 100% : 0원
- 과실율 80% : 1,591,700원 (=7,958,500원 × 0.2)
- 과실율 20% : 6,366,800원 (=7,958,500원 × 0.8)

※ 휴업손실액 6,808,500원 (75,650원(수입감소액의 85%)× 90일) + 위자료 40만원 (상해등급에 따라 결정) + 진료비 75만원 = 7,958,500원

구분	자동차사고 본인 과실비율		
	100%	80%	20%
자동차보험 보상액(원)	0	1,591,700	6,366,800
산재보험액(원)	7,050,000	7,050,000	7,050,000

**□ 시사점**

-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와 무관히 보상하기 때문에 재해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자동차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음

\*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커짐

**참고 3****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(유족)보상수준 비교 사례****□ 사고 상황**

- 배우자(여, 35세)와 생활하는 노동자 B씨(40세, 평균임금:10만원)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(과실율 20%)

\* 취업가능월수: 240개월(60세 정년), 월평균현실소득액-생활비: 178만원(세후 월 소득 267만원의 2/3)

**□ 산재보험으로 청구(유족연금: 평균임금의 47%+유족 1인당 5% 가산(20% 한도))**

- 유족보상연금(수급권자: 배우자) : 연 18,980,000원

\* 유족보상연금: 10만원(평균임금)×365×0.52(수급권자 1명)

\*\* 장의비 : 10만원(평균임금)×120일분 =1200만원

- 배우자 사망 시점 나이에 따른 급여액 변화

- (65세) 581,400,000원 (= 1898만원×30 + 1200만원)
- (75세) 771,200,000원 (= 1898만원×40 + 1200만원)
- (85세) 961,000,000원 (= 1898만원×50 + 1200만원)

**□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: 283,772,027원 (=354,715,034원 × 0.8)**

※ 상실수익액 : 178만원(월평균현실소득액-생활비)× 151.5253(240개월 라이프 니즈계수) + 위자료 8,000만원 + 장의비 500만원 = 354,715,034원

구분	배우자 사망시 나이		
	65세	75세	85세
산재보험 급여액(원)	581,400,000	771,200,000	961,000,000
자동차보험 보험금(원)	283,772,027	283,772,027	283,772,027

**□ 시사점**

-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(연금수급권자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)되어 보상수준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높음

\* 과실비율이 높거나, 연금지급이 장기간 및 유족이 많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짐